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338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3389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소176034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변론 종결 2020. 10. 22.

판결 선고 2020. 11.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소17603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872,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8. 3. 20.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들로 공동상속인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서울 관악구 F아파트 제1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2018. 6. 11.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8.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원고는 망인 소유의 주식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전하였다가 2018. 6. 21. 위 주식을 매도한 후 2018. 6. 25. 그 매도대금 58,466,794원(이하 '이 사건 주식대금'이라 한다)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식대금 중 원고의 상속 지분 1/4에 해당하는 14,616,600원을 피고들의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임의로 망인 명의의 주식 등을 자신 명의로 변경한 잘못을 시인한 후 이 사건 주식대금을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주식을 포기할 테니 피고들이 3등분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8. 9. 22.과 9. 27. 전화통화시 원고가 주식을 포기한다고 재차 확인하여 위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올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자신의 계좌로 이전한 망인 소유의 주식을 매도하였음에도 2018. 6. 25. 자신의 상속 지분 상당액(14,616,698원)을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대금 전부를 피고 B에게 송금한 점,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8. 9. 27.경 "D이하고 니하고 셋이 만나 가지고 그 주식 있는 거 그거 나눠. 그리고 끝내. 니 셋만 하잖아. 그렇게 되면 나는 끼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누고 끝내." 등의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한 점,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후인 2018. 10. 17.에야 이루어졌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 중 자신의 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9. 27.경 이 사건 주식대금 중 자신의 지분 상당액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종채

판사황정수

판사최호식